

#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

## 결 정

제 목 성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권고

의안번호 제2015-9호

제 출 자 성북구 인권위원회

### 주 문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또한 현행 ‘성평등 기본조례’에 준하여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I. 권고의 배경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성북구의 성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때의 '성평등'은 성(gender)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문화적·제도적 요인을 제거하려는 의지 속에서 실현 가능하다.

○ '여성'정책에서 '성평등' 정책으로의 이동은 여성정책 연구자들의 오랜 논의의 결과이며, 본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에 따른 차별이 없는 '모두의 평등'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성평등'이 주민의 인권향상에 유효하다고 믿는다. 구조화되어 있는 성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여성의 발전만 위한 정책으로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한 노력들이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왜곡되고 '양성평등'은 다시 여성과 남성의 산술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여성단체 및 전문가들은 '양성평등'이 성별관계가 지닌 사회문화적이며 제도적인 차별을 올바르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으며, 때문에 양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성평등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 '성평등'은 여성발전에 멈춰있는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성에 대한 평등 이념을 추구한다. 여성개발 또는 발전이라는 지난 시대의 과제를 넘어서는 인권의 지향점이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인권의 후퇴를 초래하며 이는 성북구민의 인권후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II. 권고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또한 현행 ‘성평등 기본조례’에 준하여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 Ⅲ.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5. 8. 25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